



제416 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확인 의무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요	1
-------------	---

II.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7
--------------	---

1.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	7
2.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7)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생략) <u><신설></u>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u>	⑦ ----- 제6항제3호----- ----- -----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	-----
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	-----
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계	-----. 제6항제2호-----
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	-----
에도 또한 같다.	-----.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1)는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²⁾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서는 청소년에 대

- 1)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营业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 ⑥ (생략)
- 2)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i)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ii)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중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3차 위반)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참조).

□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폭행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두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개정안의 처분면제 대상에 숙박영업자만 포함되어 있어 향후 공중위생영업자 간 형평성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목욕장 영업자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과 유사 취지의 행정처분 면제 규정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

	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 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 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 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 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 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 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 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 록 제공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 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 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 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u>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u>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u>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u>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 1】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
---------------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	--	------------	------------	---------------	--

2. 목욕장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이용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나) 이용사 2) 손님에게 도박 그	법 제11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면허정지 3월 영업정지	영 업 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영업정지	영 업 장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월	2월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나) 미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 업 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 업 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영 업 장 폐쇄명령			